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에서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법 체계를 고려하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5호자목), 한국급경사지 안전협회에 대한 상시계측관리 업무의 위탁을 대행으로 수정하였으며(안 제8조제1항, 제33조제2항제4호), 개정안에서 벌칙의 대상으로 정한 행위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조정함(안 제34조제4호 및 제5호, 제37조제1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자목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
행정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로 한
다.

안 제8조제1항 중 “자에게”를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
지안전협회에게”로 한다.

안 제26조제3항 중 “제4항에 따른”을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안 제33조제2항제4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3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37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1. ~ 4. (생략)	1. (현행과 같음) 2. ·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붕괴·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	1.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u>에 따라 지정·고 시된 지역을 말한 다.</u>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 정기관 및 공공기 관을 말한다. 가. ~ 아. (생 략) <u><신 설></u>	5. ----- ----- ----- ----- -----. 가. ~ 아. (현행 과 같음) 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행정 기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 법」에 따른 학교	5. ----- ----- ----- ----- -----. 가. ~ 아. (개정 안과 같음) 자. 특별시·통합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 시·도·특별자 치도의 교육 청,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교육 지원청, 「초 · 중 등 교 육 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 고 등 교 육 법」에 따른

<u>자. (생 략)</u> 6. “계측업”이란 이 <u>법의 적용을 받</u> <u>는 급경사지 및</u> <u>기타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시설</u> <u>에 대한 상시계</u> <u>측을 업으로 하</u> <u>는 것을 말한다.</u> <u><신 설></u> 제8조(급경사지의 계	<u>차. (현행 자목과</u> <u>같음)</u> 6. “계측업”이란 상 <u>시계측관리에 필</u> <u>요한 계측기기,</u> <u>운영시스템 등을</u> <u>설치하는 업(業)</u> <u>을 말한다.</u> 7. “상시계측관리” <u>란 계측기기 등</u> <u>을 통하여 취득</u> <u>한 급경사지 지</u> <u>반의 위치변화와</u> <u>관련된 자료를</u> <u>저장·관리 및</u> <u>분석하여 붕괴</u> <u>위험 여부를 판</u> <u>단하고, 피해가</u> <u>예상되는 지역에</u> <u>예·경보를 발령</u> <u>하는 것을 말한</u> <u>다.</u> 제8조(급경사지의 계	<u>국·공립학교</u> <u>차. (개정안과 같</u> <u>음)</u>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제8조(급경사지의 계
---	--	---

실시하는 성능검사
(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
측기기를 사용하여
야 한다.

<신 설>

[illegible]

② 관리기관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제4
항에 따른 성능검
사 기준에 적합하
다고 인정한 경우
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

③ -----

제4

항에 따라-----

② 성능검사의 대상·<u>기준</u>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2항</u>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u>제2항</u>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u>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u> ④ 성능검사의 대상·<u>기준·주기</u>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4항</u>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u>제4항</u>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 -----.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	--	--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특
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4. 5. (생략)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시계측관
리

5. · 6. (현행 제4호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개정안과 같음)

②

1. ~ 3. (개정안과
같음)

<삭 제>

4. · 5.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 음)	및 제5호와 같 음)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 ----- ----- ----- -----.	제34조(벌칙) ----- ----- ----- ----- -----.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자가 <u>상시계측 관리업을 한 때</u>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자가 <u>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 관리를 대행한 때</u>	1. (개정안과 같음)
2. 3. (생략)	2. 3. (현행과 같 음)	2. 3. (개정안과 같 음)
<u><신 설></u>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자	<u><삭 제></u>
<u><신 설></u>	5.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u><삭 제></u>
제37조(과태료)	제37조(과태료) <u><신</u>	제37조(과태료) ①

	<u>설></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u>
		<u>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 ----- ----- -----.	②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	3. ----- ----- -----안 니한----- -----	3. (개정안과 같음)

<u>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u> 4. <u>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5.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u><삭 제></u> 5. ~ 8.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u>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안과 같음) 5. ~ 8. (개정안과 같음) ⑥ <u>제1항 및 제2항</u>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93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윤건영 · 양부남 · 이광희
임오경 · 장종태 · 박정현
신정훈 · 차지호 · 채현일
권칠승 · 위성곤 · 최혁진
윤종균 · 김성희 · 박지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관리,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 제2호 등).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개정안에서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를 법 체계를 고려하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5호자목),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대한 상시계측관리 업무의 위탁을 대행으로 수정하였으며(안 제8조제1항, 제33조제2항제4호), 개정안에서 벌칙의 대상으로 정한 행위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조정함(안 제34조제4호 및 제5호, 제37조제1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상시계측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붕괴위험지역”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자.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7.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

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을 “상시계측관리를”로 하고, “자에게”를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게”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 중 “제25조에”를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를 “계측업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상시계측관리를”을 “계측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기준 및”을 “기준·주기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제2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제4항 중 “제2항에”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를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교육운영실태 점검·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호 중 “상시계측관리업을 한”을 “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제3호 중 “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u>붕괴위험지역</u> ”이란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삭 제>
3.·4. (생 략)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신 설>	4. “ <u>붕괴위험지역</u> ”이란 재해위험도평가 결과 붕괴·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 <u>관리기관</u> ”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5. ----- -----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u>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u>

자. (생 략)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경사지 지반의 침하·활동·전도(顛倒) 및 붕괴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차. (현행 자목과 같음) 6. -----상시계측 관리에 필요한 계측기기, 운영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업(業)-----. 7. “상시계측관리”란 계측기기 등을 통하여 취득한 급경사지 지반의 위치변화와 관련된 자료를 저장·관리 및 분석하여 붕괴 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① -----
--	---

등으로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인 계측(計測)·자료관리(이하 “상시 계측관리”라 한다)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6. (생략)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상시계측관리
를-----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계-----.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
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생략)

<신설>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가 상시계측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이하 “성능

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8. (현행과 같음)

②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계측업을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을

검사”라 한다)에 합격한 계측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성능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성능

-----.

② 관리기관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에 사용
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주기
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
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인
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
은 계측기기로서 행정안전부장
관이 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다.

④ -----기준·주기
및-----
-----.

⑤ -----제4항에

-----.

⑥ -----

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필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
무교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 -----
제4항에-----

-----.

제30조(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
무교육)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교육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실태
를 점검·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
육과정의 취소 또는 교육기관
의 지정 취소 등-----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
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요건, 교육운영실태 점검·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u>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u> 2. 3. (생략) 제37조(과태료)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u>아니하거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u> 4.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1. ----- ----- -----계측업을 하거나 상시계측관리를 대행한--- 2. 3.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u>아니한 자</u> <삭제>
--	---

5.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5. ~ 8.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